[태국]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및 유제품 수출시 구비서류

1. 태국과 한국간 거래계약 작성시 유의 사항

- 가. 계약 당사와 계약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인적사항 정보 및 서명권자에 대한 확인
- 나. 계약서의 언어: 태국에서는 태국어, 영어 중복 계약서 사용 추천(번역 공증을 통해)
- 다. 법률의 선택과 법원의 선택
 - 계약시 서명 방법 : 태국에서는 친필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, 또한 법인 회사 스탬프를 같이 날인하여야 함
 - 법원은 태국법원의 공증 받을 필요가 있음 분쟁 발생시 법적인 보호 계약서상 쌍방간의 보증인 각각 2명과 변호사 등 총 7명의 싸인
- 라. 계약 날짜 및 장소 명기
 - 보통 일반적인 계약 기준을 따르면 됨.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, 합의된 물건에 대한 정보, 납품 소요기간, 결재 방법, 계약 위반 및 파기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기재 하여야 함
 - * 현재 태국에서 통용되는 표준 계약서 없음

2. 수출업자의 조건

우유 및 유제품을 태국에 수출하려는 회사 및 법인 구비서류

- 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
- 법인 납세번호 사본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일반 사업자 수입 인증 번호 사본
- 회사 대표 신분증(여권)사본 및 법인 직인 스탬프
- 회사 정관
- 주주 명부
- 축산물 이력번호(NKV) 사본
- 축산, 검역, 수의과,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
- 원산지 증명서 사본
- 건강 안전 증명서 사본
- 검사 분석 결과 증명서 사본
- 청구서 사본